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32
----------	-----

2019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겸임”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행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며(안 제5조제3호),

나. 부설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권한을 소속학교장 위임 사항에서 삭제함(조례 제6조제2호)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32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등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설 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¹⁾ 지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방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 전보 등의 인사관련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에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및 현행 인사체계와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2호)」

4. 겸임(법 제30조의3, 임용령 제7조의5)

-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
※예 :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직·기술직 업무 겸임 가능
-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 겸임기간은 2년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시보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경징계”를 “시보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겸임·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경징계”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2. (생략)</p> <p>3.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u>시보</u> 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경징계</p> <p>3의2. ~ 36. (생략)</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시보</u> 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결입·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경징계</p> <p>3의2. ~ 36.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p> <p>1. (생략)</p> <p>2. <u>부설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u></p> <p>3. ~ 18. (생략)</p>	<p>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 18. (현행과 같음)</p>